◉서울전파관리소고시 제2025-16호

「전파법」제21조(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) 제5항에 따라 무선국(항공국)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(고시대상무선국), 제35조(무선국의 고시사항)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0월 20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항공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변경허가

1. 변경허가일, 허가번호, 시설자의 명칭, 무선국 종별

변경허가일	허가번호	시설자 명칭	무선국 종별	山 고
2025.09.26.	33-1999-10-0000004	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	항공국	장치 증설

2. 무선설비의 설치장소, 호출명칭

허가번호	설치장소	호출명칭(부호)	
33-1999-10-0000004	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, 인천공항 (운서동)	인천국제공항AICC	

3. 주파수, 전파의 형식, 점유주파수대역폭, 안테나 공급전력

허가번호	주파수(MHz)	전파 형식	점유주파수 대역폭	안테나 공급전력	비고
33-1999-10 -0000004	119.750, 120.800, 121.350, 121.400, 121.500, 123.575, 124.200, 125.150, 243.000, 269.200, 293.300, 305.700, 353.200	6K00A3EJN	6 kHz	50W	장치 증설